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3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6. 8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가. 신설된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사용료 상한액을 신설하고자 함
- 나. 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및 유소년 축구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
- 다. 현행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「민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[별표 1] 신설 체육시설 명칭과 위치 반영(안 제3조)
- 나. [별표 2] 신설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추가(안 제11조)
- 다. [별표 5] 군 소속팀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확대(안 제14조)
- 라.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도록 자치법규에서 지자체장의 면책을 규정한 조항 삭제(안 제16조제2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 41,213천원 정도 반영(2차 추경)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6. 4. 22 .~ 5. 12.)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붙임 참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

명 칭	위 치	주요 시설
국 민 체 육 센 터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	- 수영장, 헬스장
군 민 운 동 장	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-10	- 축구장, 정구장, 배구장(족구장), 게이트볼장
군 민 체 육 관	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	- 다목적체육관, 다목적강당,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
달 성 테 크 노 스 포 츠 센 터	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	- 수영장, 어린이놀이시설, 다목적강당, 문화강의실
달 성 테 크 노 폴 리 스 생 활 체 육 광 장	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	- 생활체육광장, 통합놀이터
논 공 축 구 장	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	- 축구장(풋살장), 테니스장
구 지 축 구 장	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	- 축구장
화 원 테 니 스 장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	- 실내테니스장, 실외테니스장
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	- 테니스장
현 풍 테 니 스 장	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	- 테니스장
다 사 체 육 공 원	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	- 축구장, 테니스장, 농구장, 족구장,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, 다목적트랙, 어린이놀이터, 광장, 야외무대. 산책로
가 창 체 육 공 원	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	- 축구장, 테니스장, 농구장, 족구장, 풋살장, 다목적트랙, 어린이놀이터, 광장, 지압보도
명 곡 체 육 공 원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	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
다 사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 육 시 설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35	- 풋살장, 야외무대, 야외운동기구, 놀이터, 맨발걷기

명 칭			위 치	주요 시설
달 성 스포츠 파크		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	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
화 원 진 천 천 파크골프장			화원읍 구라리 1400	-파크골프장
논 공 위 천 파크골프장			논공읍 위천리 648	-파크골프장
논 공 달 성 보 파크골프장			논공읍 남리 1	-파크골프장
가 창 파크골프장			가창면 옥분리 778-7	-파크골프장
유 가 한 정 파크골프장			유가읍 한정리 596-1	-파크골프장
구 지 평 촌 파크골프장			구지면 평촌리 1-43	-파크골프장
옥 포 파크골프장			옥포읍 간경리 966-1	-파크골프장
현 풍 원 오 파크골프장			현풍읍 원교리 908-1	-파크골프장
강 변 체 육 시 설	낙 동 강	달 성 강 변 야 구 장	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-1번지	- 야구장, 선수대기실
		하빈지구 체육시설	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-3번지	- 야구장, 축구장, 농구장, 족구장
	금 호 강	금호강변 체육시설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-1번지	- 축구장, 족구장, 농구장 - 배드민턴장, 게이트볼장 - 기타체육시설(파크골프장, 다목적트랙 등)

[별표 2]

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(제11조 관련)

구 분	사 용 구 분	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
	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
군 민 체 육 관	전 용 사 용	체 육 관	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70,000	80,000
			야 간 (1시간)	60,000	80,000	80,000	100,000
		다 목 적 강 당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60,000	70,000
			야 간 (1시간)	50,000	70,000	70,000	90,000
	강 습 료	단체강습	월 70,000 (주 3회)		-		
			월 60,000 (주 2회)				
			월 50,000 (주 1회)				
	회 원 권	개인강습 (1회 20분)	월 150,000 (주 3회)		-		
		1일 회원 (2시간)	5,000		-		
		월회원 (주6회, 1개월, 1일 2시간)	40,000		-		
달 성 테 크 노 스 포 츠 센 터	다 목 적 강 당	주 간 (1시간)	50,000	70,000	50,000	70,000	
야 간 (1시간)		60,000	80,000	60,000	80,000		
가 창 체 육 공 원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-	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		
다 사 체 육 공 원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히 딩 크 드림필드풋살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90,000	120,000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20,000	180,000	
명 곡 체 육 공 원	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	주·야간	-	-	-	-	
	다목적운동장 (축구장)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다사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 육 시 설	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90,000	120,000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20,000	180,000	

구 분	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	
	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	
군 민 운 동 장			주·야간		-	-	-	-
논 축 구 장	축 구 장	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풋 살 장	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105,000	135,000	
	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35,000	165,000	
구 축 구 장	축 구 장	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강 변 야 구 장		마 사 토	주 간 (2시간)	45,000	70,000	90,000	140,000	
		인 조 잔 디		65,000	90,000	150,000	200,000	
달 성 스포츠파크	경기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80,000	120,000	300,000	500,000	
			야 간 (2시간)	120,000	180,000	500,000	800,000	
	보조경기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	
	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	
	다목적체육관	전용사용	주간 (1시간)	40,000	50,000	60,000	70,000	
			야간 (1시간)	50,000	70,000	70,000	90,000	
		강습료	단체강습 (1회 1시간)	월 100,000 (주 3회)		-		
				월 80,000 (주 2회)				
			개인강습 (1회 20분)	월 120,000 (주 3회)		-		
				월 100,000 (주 2회)				
		개인사용	1일 회원 (2시간)	5,000		-		
			월회원 (1개월, 1일 2시간)	50,000 (주5회)				
				40,000 (주3회)				
				30,000 (주2회)				
하빈지구 체육시설	야 구 장		주 간 (2시간)	45,000	70,000	90,000	140,000	
	축 구 장		주 간 (2시간)	35,000	50,000	100,000	150,000	
	농 구 장		주·야간	-	-	-	-	
	족 구 장		주·야간	-	-	-	-	

구 분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
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
실외 테니스장 (가창체육공원, 다사체육공원, 화원테니스장, 다사매곡테니스장, 군민운동장, 현풍테니스장, 달성스포츠파크, 논공축구장 내)	개인	주 간 (2시간)	면당 14,000	면당 18,000	면당 28,000	면당 37,000
		야 간 (2시간)	면당 28,000	면당 32,000	면당 55,000	면당 65,000
	단체	주 간 (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200,000	-	-	-
		야 간 (주1회,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120,000	-	-	-
실내 테니스장 (화원테니스장)	개인	주 간 (2시간)	면당 35,000	면당 40,000	-	-
		야 간 (2시간)	면당 40,000	면당 50,000	-	-
	단체	주 간 (주1회, 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180,000	-	-	-
		야 간 (주1회, 1개월, 1일 3시간)	면당 200,000	-	-	-
테니스 강습료	실내테니스장	주 3회	200,000		-	-
		주 2회	150,000		-	-
	실외테니스장	주 3회	150,000		-	-
		주 2회	100,000		-	-
	1일 강습료 (1회 20분)	실내테니스장	20,000		-	-
		실외테니스장	15,000		-	-
비 고	1.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·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%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.(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) 2. 군(위탁기관 포함)에 등록된 군(민)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·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%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.(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.) 3. 테니스장 단체는 15명,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,000원 추가 징수함. 4.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.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(월~금)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(토,일)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. 6. 군민체육관 월회원은 주6회(월~토) 사용 가능함. 달성스포츠파크의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은 종목당 평일(월~금)사용기준이며, 주말(토,일)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. 7. 군민체육관(체육관, 다목적체육관)과 테크노스포츠센터(다목적강당)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(09:00 ~ 18:00), 야간(18:00 ~ 23:00)으로 함. 8.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(증빙서류)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.					

[별표 5]

사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국가나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	전액면제	
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·단체	전액면제	
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연습으로 사용하는 경우	전액면제	
달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연습으로 사용하는 경우	전액면제	
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	80%	
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80% 이내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50%	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50%	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50%	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 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50%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50%	
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	30%	
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)	50%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50%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	5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	5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	30%	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	50%	
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	50%	
스포츠클럽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	30%	
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	10%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	제16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 <삭제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1]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 <table><tr><th>명칭</th><th>위치</th><th>주요 시설</th></tr><tr><td>국민체육센터</td><td>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</td><td>- 수영장, 헬스장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생략)</td></tr><tr><td>명곡체육공원</td><td>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</td><td>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</td></tr><tr><td>달성스포츠파크</td><td>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</td><td>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생략)</td></tr></table>	명칭	위치	주요 시설	국민체육센터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	- 수영장, 헬스장	(생략)			명곡체육공원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	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	달성스포츠파크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	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	(생략)			[별표 1]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(제3조 관련) <table><tr><th>명칭</th><th>위치</th><th>주요 시설</th></tr><tr><td>국민체육센터</td><td>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</td><td>- 수영장, 헬스장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tr><td>명곡체육공원</td><td>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</td><td>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</td></tr><tr><td>다사외곽순환도로하부공간체육시설</td><td>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35</td><td>- 풋살장, 야외무대, 야외운동기구, 놀이터, 맨발걷기</td></tr><tr><td>달성스포츠파크</td><td>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</td><td>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</td></tr><tr><td colspan="3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/table>	명칭	위치	주요 시설	국민체육센터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	- 수영장, 헬스장	(현행과 같음)			명곡체육공원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	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	다사외곽순환도로하부공간체육시설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35	- 풋살장, 야외무대, 야외운동기구, 놀이터, 맨발걷기	달성스포츠파크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	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	(현행과 같음)		
명칭	위치	주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체육센터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	- 수영장, 헬스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곡체육공원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	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성스포츠파크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	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칭	위치	주요 시설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민체육센터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	- 수영장, 헬스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명곡체육공원	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	- 인라인스케이트장, X-게임장, 인공암벽, 다목적운동장(축구장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사외곽순환도로하부공간체육시설	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35	- 풋살장, 야외무대, 야외운동기구, 놀이터, 맨발걷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달성스포츠파크	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	- 축구장, 테니스장, 전천후게이트볼장, 족구장, 농구장, 다목적체육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별표 2]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(제11조 관련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사용구분</th><th colspan="2">체육경기</th><th colspan="2">체육경기외</th></tr><tr><th>평일</th><th>토·공휴일</th><th>평일</th><th>토·공휴일</th></tr><tr><td colspan="6">(생략)</td></tr></table>	구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평일	토·공휴일	평일	토·공휴일	(생략)						[별표 2]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(제11조 관련) 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분</th><th rowspan="2">사용구분</th><th colspan="2">체육경기</th><th colspan="2">체육경기외</th></tr><tr><th>평일</th><th>토·공휴일</th><th>평일</th><th>토·공휴일</th></tr><tr><td colspan="6">(현행과 같음)</td></tr></table>	구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평일	토·공휴일	평일	토·공휴일	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구분		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평일	토·공휴일		평일	토·공휴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생략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사용구분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평일	토·공휴일	평일	토·공휴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
			평 일	토·공 휴일	평 일	토·공 휴일
가 창 체 육 공 원	축구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풋살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-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	
다 사 체 육 공 원	축구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히딩크 드림 드 풋살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90,000	120,000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20,000	180,000
명 곡 체 육 공 원	인라인 스케이 트 장	주·야 간	-	-	-	-
	다목적 운동장 (축구장)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군민운동장		주·야 간	-	-	-	-
논 공 축 구 장	축구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풋살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105,000	135,000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35,000	165,000
구 지 축 구 장	축구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(생 략)						

구 분	사 용 구 분		체 육 경 기		체 육 경 기 외	
			평 일	토·공 휴일	평 일	토·공휴 일
가 창 체 육 공 원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-	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	
다 사 체 육 공 원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히 딩 크 드 리 드 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90,000	120,000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20,000	180,000
명 곡 체 육 공 원	인 라 인 스 케 이 장	주·야 간	-	-	-	-
		다 목 적 운 동 장 (축구장)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다 사 의 관 속 환 도 로 하 부 공 간 체 육 시 설	풋 살 장	주 간 (1 시 간)	40,000	50,000	90,000	120,000
		야 간 (1 시 간)	50,000	60,000	120,000	180,000
군민운동장		주·야 간	-	-	-	-
논 공 축 구 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	풋 살 장	주 간 (1시간)	40,000	50,000	105,000	135,000
		야 간 (1시간)	50,000	60,000	135,000	165,000
구 지 축 구 장	축 구 장	주 간 (2시간)	70,000	100,000	200,000	300,000
		야 간 (2시간)	100,000	150,000	300,000	450,000
(현행과 같음)						

[별표 5]

사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국가나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	전액 면제	
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·단체	전액 면제	
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	80%	
(생 략)		

[별표 5]

사용료의 감면(제14조 관련)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국가나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	전액 면제	
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·단체	전액 면제	
달성군 소속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경기연습으로 사용하는 경우	전액 면제	
달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연습으로 사용하는 경우	전액 면제	
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	80%	
(현행과 같음)		

관 계 법 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민법」

제750조(불법행위의 내용)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다. 삭제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신규 체육시설의 현황 반영 및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 군 소속 직장운동 경기부 및 유소년 축구팀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재정수반 요인

- 가. 신규 체육시설 운영·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위탁 전출금 발생
- 나. 신규 체육시설 풋살장 이용료 수입 발생

3. 관련조문

- 「달성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」 제3조, 제11조 및 제14조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
- 시설물 운영비용 : 총 387,107,000원 정도

- 26년 6월~12월(6개월) 운영비용 : 41,213,000원 정도

- 인건비 : $10,320\text{원}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2\text{명} \times 30\text{일} \times 6\text{개월} = 29,721,600\text{원}$
- 4대 보험료 : $29,721,600\text{원} \times 10.4\%(\text{보험요율합}) = 3,091,000\text{원}$
- 시설유지관리비(소모품 및 유지보수비) : $400,000\text{원} \times 6\text{개월} = 2,400,000\text{원}$
- 공공요금(전기, 수도, 통신 등) : $1,000,000\text{원} \times 6\text{개월} = 6,000,000\text{원}$

- 27년~30년(4년간) 운영비용 산출금액 : 345,894,000원 정도

- 인건비 : $10,526\text{원} \times 8\text{시간} \times 2\text{명} \times 30\text{일} \times 12\text{개월} = 60,629,760\text{원/연간}$

- 4대 보험료 : 60,629,760원 × 10.4%(보험요율합)= 6,305,000원/연간
- ※ 최저임금 연간 2% 상승률 적용하여 산출(연도별 비용추계표 참고)
- 시설유지비(소모품 및 유지보수비) : 4,800,000원/연간
- 공공요금(전기,수도, 통신 등) : 12,000,000원/연간
- 추계기간 : 2026년 ~ 2030년(5년간)

나. 추계 결과 : 약 387,107,000원 정도

-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87,107,000원 정도의 재정 군비 투입 예상
- 시설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출이 있지만, 유료 체육시설로 야간 운영 등을 통한 사용료 수입 발생으로 충당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다. 재원조달방안 : 자체예산(추경반영)

5. 연도별 비용추계표 : 붙임

작 성 자			
소속 및 직위	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장	성명(연락처)	이석철 (053-668-8481)

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 6월~12월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41,213	83,735	85,074	87,832	89,253	387,107
구장 사용료		41,213	83,735	85,074	87,832	89,253	387,107
세 출		41,213	83,735	85,074	87,832	89,253	387,107
인건비		32,813	66,935	68,274	71,032	72,453	311,507
시설유지비		2,400	4,800	4,800	4,800	4,800	21,600
공공요금		6,000	12,000	12,000	12,000	12,000	54,000
재원 조달							
의 존 재 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 체 수 입	소 계						
	지방세						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균 비		41,213	83,735	85,074	87,832	89,253	387,107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